

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중랑구 제3선거구 출신 박승진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○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

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무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
○ 주거복지센터는

「주거기본법」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- 조례 제정시 운영 사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함에 있어 통제기능이 필요하여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나, SH서울주택도시공사 대행 위탁으로 추진함에 따라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- 이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주거복지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.
- 존경하는 민병주 위원장님!

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주거의 의미가 시민들의 삶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커지는만큼 주거복지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.

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책임지는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앞서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감안하셔서
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